

第四分科討論要旨

曹圭大(사회자) : 앞서 두 분이 너무 열성적으로 主題를 發表해 주셨기 때문에 時間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셔서 다섯분 討論者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李在性 辯護士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性(변호사) : 黃辯護士님께서 辯護士法 改正, 法曹一元化, 지역擴大와 事務所大型化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辯護士法 改正問題를 보면 辯護士制度가 생긴 이후 辯護士自治 획득을 위해 立法活動을 해왔으나 國會에 못 간 것이 많습니다. 이번 辯護士協會에서 만든 辯護士法이 13번째가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辯護士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하는 批判을 하신다면 달게 받을 수 믿에 없으나 이같은 어려운 與件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法曹一元化問題는 現在 우리나라에서는 判事·檢事·辯護士들이 出發할 때는 同一한 資格을 가지므로 그 限度에서는 一元化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相互間的 交流는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法務部長官中에는 辯護士 出身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辯護士團體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고 政治的 次元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事務所大型化問題는 司法試驗에서 현재와 같이 年間 300명씩 계속 뽑으면 研修院修了後 相當數가 辯護士로 나가야된다는 結論에 이릅니다. 制度로서는 辯護士經歷이 없는 사람이 開業을 하려면 큰 事務所에서 적어도 10年은 일을 배우는 體制가 되어야 하는데 現在 辯護士制度로서는 난감한 일입니다. 이처럼 個人의 힘으로는 안되니까 合同事務所를 만들어서 新進辯護士를 雇傭하는 길을 터야 할 것입니다. 한편 職域擴大의 問題는 제 個人 생각으로는 辯護士 數가 늘어가던 자인히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11年前 簡特法에 의해 辯護士가 公證業務를 兼務함에 따라 10年동안 公證事務가 8~9배 늘었습니다. 이는 公證事務를 擔當하는 사람의 數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런 정도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崔教授님께서도 것마리에 이나라에 法支配原則이 支配하게 하기 위해서는 教授以下·判事·檢事·辯護士들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고 그中 辯護士가 선봉에 서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辯護士들은 이 말을 銘心해야 할 것입니다. 現實적으로 볼 때 理想的으로 안된 것이 많으나 裁判過程에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자라는 점을 계

속 보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國家가 基金을 마련해서 醫療保險식으로 法律 service를 제공하지는 意見에는 全的으로 同感입니다. 그리고 判·檢事を 辯護士 中에서 신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事實的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日本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으나만 우리 現實情으로는 이를 바꾸는 것은 革命보다도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無辯郡에 대해서는 十餘年前에 敍석해서도 ‘警察署있는 데마다 辯護士가 있어야 한다’고 主張한 일도 있었읍니다. 이에 대해 辯明을 하자면 네가 聖職者이니 네 個人生活을 돌보지 않고 奉任만 하라라고 말할 수는 있지 않겠읍니까? 이렇게 여기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辯護士協會의 統制의 힘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비유하자면 시어머니인 法務部가 살림을 관장하고 며느리에게는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教授님께서도 自律統制가 可能하다고 하셨지만 현재 辯護士協會는 檢査도 못합니다. 強制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꼭 맡겨주셨으면 하는 데 영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目前에 輕懲戒는 우리가 하고 重懲戒만 당신들이 하라고 제안했는데 아직은 懲戒權만은 辯協에 못 주겠다는 얘기가 바요.

그리고 다음에 提訴前和解 問題인데 현재 提訴前和解는 辯護士會에서 統制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崔교수님 말씀이 옳다면 辯護士會가 責任을 지야하고 個個 辯護士는 責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提訴前和解를 고리대금업자가 쓰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 國家가 돈을 내거나 財團을 만들어 庶民金融을 도와주는 方法이 있다면 몰라도 이에 대한 根本的인 對策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벌써 예정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時間을 참작하셔서 要點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梁教授님 말씀해 주십시오.

梁承斗(연세대) : 이틀간의 討論後 느낀 것은 教授와 在野法曹人 사이에 대화의 없었다는 인식이 강하게 듭니다. 앞으로는 오늘과 같이 communication을 할 수 있는 機會가 있어 넓게 보아서 같은 同業者 意識을 고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近代의 의미의 司法制度가 始作된 것은 甲午更張때이나 實質的·民主主義的인 司法制度는 不過 30年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과 우리 國民의 傳統的인 法意識이 近代的인 司法制度를 심기에는 不充分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대중교육의 方向에 더욱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辯護士制度를 고찰할 때 問題點은 첫째 制度的인 問題, 둘째 市民이 느끼는 辯護士, 셋째 法律教育을 中心으로 한 教授와 辯護士의 관련이 될 것입니다.

우선 制度的인 問題에 대해서는 퍼 여러가지가 나왔읍니다만 몇가지만을 言及하면 먼저 辯護士 숫자가 每年 300名으로 느는 것에 대해 在野法曹人들이 몹시 걱정하는 듯한 印象입니다만 실제 訴訟數와 비교해 볼 때 그다지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辯

護士들의 平均 연령을 보면 57.3세이며 45세이하는 전체 6%에 지나지 않고 있어 젊은 辯護士가 要望되고 있습니다. 현재 判事는 그 계급이 여럿이지만 辯護士는 그 경험에 관계없이 같은 데 이를 美國·西獨 혹은 英國처럼 나눠 보는 제도를 고려해 보면 어떻까 합니다.

다음에 市民이 보는 辯護士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辯護士 문턱이 높다고 하는 데 이를 낮추는 方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社會發展에 대한 辯護士의 役割이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더욱 積極인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法學教育和 辯護士에 대해서는 現在 辯護士 中에 講座를 맡으신 분이 드물고 大學教授 中에 辯護士資格을 가진 분이 적습니다. 한편 大學교수가 辯護士가 되는 것은 法에 禁止되어 있으므로 大學側이 좀 더 門호를 開放하여 辯護士님이 後進을 育成하는 데에 積極的으로 參與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 梁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朴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朴善宇(미국변호사) : 主催側에서 질터리 하라는 것이 一般人(layman)으로서 하라는 것으로 알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辯護士를 公共性을 지닌 法律專門人으로서 司法機關의 일부로서 定義한 것이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司法機關의 일부라고 하느냐하면 訴訟을 代理하기 때문이라기 보다 물론 그것도 큰 원인이지만 判事·檢事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이 不當하다고 하면 辯護士는 그것은 法이 잘못되었다 아니면 訴訟해 봐야 알겠다 이 두가지로 말하고 있는 데, 어떤 法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辯護士가 가장 자유롭게, 가장 專門的으로 고치는 데 가장 유리한 立場에 있다고 생각되는 데도 이에 대한 努力이 不足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消極인 姿勢가 상당히 많은 分野에서 부조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法으로 안되거나 國民들이 非정상적인 方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辯護士들의 積極인 努力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회자 : 朴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檢察官입장에서 申君사님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申昌彥(법무부) : 學界와 在野法曹界 선배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私見으로 두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辯護士 職務職域과 事務所大型化 問題인데요 現在 辯護士의 職務는 訴訟事件 代理가 위주이지만 社會·經濟發展으로 法務수요가 專門化·大型化되어 訴訟事件이외의 經濟的·綜合的 project에 대한 legal service를 해야 될 時代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先進 外國처럼 事務所를 大型化하는 方向으로 指向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辯護士 監督權문제인데요 이는 곧 辯護士 自治問題로 궁극적으로 指向해야 할

方向이나 現實적으로 보면 社會現實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회여건에 대한 法曹界·學界의 보다 깊은 연구를 거쳐 해결해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사회자 : 申검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討論으로서 金敎昌 변호사님께서 主題發表와 討論을 종합하는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金敎昌(변호사) : 우리의 辯護士法은 조선 辯護士會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改正이 시급한 實情인데 나행리 現在 法務部에서 이에 대해 關心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改正의 方向에 대해서는 黃辯護士님께서 몇가지 指摘하셨는데 제 意見을 말씀드리면 첫째 辯護士가 社會的 公職임을 明示하여 民主社會를 이룩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機關임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해야겠고, 둘째 辯護士의 自治·自律이 이루어지는 方向으로 改正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셋째 社會의 變化에 적응하는 法律 service를 充足하기 위해 事務所를 大型化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異議가 없는 것 같으므로 우리나라도 合名會社와 유사한 法務法人制度를 發展시켰으면 합니다.

다음 崔교수님께서 辯護士의 實相을 法社會學的 측면에서 신랄한 批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는 그야말로 귀담아 들을 말도 많았으나 몇마디는 현실을 잘못 이해하셨거나 偏見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倫理觀·價値觀을 말씀하시면서 유교등을 法으로 대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法과 宗教나 道德은 그 次元이 다르므로 종교나 도덕이 할 일을 法이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辯護士들이 學問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辯護士들이 學問에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辯護士들의 報酬가 중견 法官의 2배, 20배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事實과 다르며 대부분의 辯護士들은 대개 그 수준이며 상당수는 그보다도 적은 것이 現在 實情입니다.

또 敎授님께서 司法書士제도와 辯護士제도의 並行이 可能한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黃辯護士님이 말씀하셨듯이 理想的인 것은 辯護士제도로 統一하는 것이며 그 方法은 간단한 전형등을 통해 辯護士로 흡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法律文化를 發展시키는 데 다같이 노력하게 했으면 합니다.